

# 제5대 강원도장애인역도연맹 회장선거 일정

## 1. 회장 후보자

- 접수 기간: 2023년 03월 02일(목) 9:00 ~ 03월 06일(월) 18:00
- 접수 장소: 강원도장애인역도연맹 사무국
- 접수 위치: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279 1층 강원도장애인역도연맹
- 후보자공고: 2023년 03월 07일(화) 13시
- 제출서류

- 후보자 등록신청서(별지 제3호 서식)
- 가족관계증명서
-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
- 징계사실 유·무확인서(체육단체 경력 후보자)(별지 제4호 서식)
-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확인서(별지 제5호 서식)
- 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서(별지 제6호 서식)
- 퇴임증명서(해당자만 제출)

## 2. 선거인 명부

- 열람 기간: 2023년 02월 28일(화) ~ 03월 02일(목)
- 명부 확정: 2023년 03월 03일(금)

## 3. 회장선거

- 일 시: 2023년 03월 12일(일) 14시 ~ 16시까지
- 장 소: 강원도장애인역도연맹 사무국
- 위 치: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279 1층 강원도장애인역도연맹

#### 4. 주요일정

### 【 제5대 강원도장애인역도연맹 회장 선거 일정 】

02월26일(일)	02월27일(월)	02월28일(화)	03월01일(수)	03월02일(목)	03월03일(금)	03월04일(토)
	선거일정 공고			↳ 후보자 접수기간 03월02일 09:00 ~		
03월05일(일)	03월06일(월)	03월07일(화)	03월08일(수)	03월09일(목)	03월10일(금)	03월11일(토)
03월06일 18:00까지 5일간 ↳	후보자 공고	↳	후보자 선거운동 4일간	⇒		
03월12일(일)	03월13일(월)	03월14일(화)	03월15(수)	03월16일(목)	03월17일(금)	03월18일(토)
• 회장선거 •	【당선공고】					
03월19일(일)	03월20일(월)	03월21일(화)	03월22일(수)	03월23일(목)	03월24일(금)	03월25일(토)
03월26일(일)	03월27일(월)	03월28일(화)	03월29일(수)	03월30일(목)	03월31일(금)	

## 5. 회장 결격사유

### ▷ 회장 및 임원의 결격사유 미 해당자

-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-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-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각 목에 따른 사람
  -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
  - 승부조작, 편파판정, 횡령·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
  -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
- 국회의원
-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해임된 임원으로 관리단체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### ▷ 장애인체육단체의 회장 및 임원이 회장 후보자로 등록 시

- 국가공무원법
  - 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   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 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 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 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 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  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 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
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  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◎ 형법

- 제314조(업무방해)
  -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.
- 제355조(횡령, 배임)
  -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.
-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◎ 국민체육진흥법
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9. 체육단체”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.
    - 가. 제5장에 따른 통합체육회·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·지회(지부·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), 한국도핑방지위원회,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
    - 나.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
    - 다. 「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
  - 제47조(벌칙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  - 1.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)·감독·코치·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
    - 2.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
  - 제48조(벌칙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  - 1.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·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(「초·중등 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)
    - 2. 제14조의3을 위반한 운동경기의 선수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)·감독·코치·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
    - 3.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
    - 4.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
    - 5.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
    - 6.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